



안내 자료

이혼

이 안내 자료는 연방 [이혼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이혼하는 것에 관한 일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혼 신청 전에 적어도 한 배우자가 캐나다 주 또는 준주에 최소한 1년간 거주했을 시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 [이혼법](#)에 따라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상황에 한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법상 혼인법](#)에 따라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란?

이혼은 결혼한 커플이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한 부부만이 이혼할 수 있으며, 법원만이 이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더 이상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이혼법](#)은 결혼한 부부가 캐나다에서 이혼을 요청했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이혼법](#)은 이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 육아 계획 같은 사안들을 다룹니다. 또한, 주법이나 준주법이 부부 재산 분할 같은 일부 사안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법이나 준주법은 별거하나 이혼 신청은 하지 않는 결혼한 부부 및 별거하는 사실혼 커플에게 적용됩니다. 이 같은 법들은 일반적으로 [이혼법](#)의 규정과 비슷하며 일부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법들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나 준주 법무부 또는 법무 장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려면, 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나 준주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 양식과 절차는 주 및 준주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이혼 신청법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나 준주 법무부 또는 법무 장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필요하나요?

이혼하려면, 자신의 혼인 관계가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별거하여 따로 산지 최소 1년 이상이 됨. 또는
-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가혹하게 굴어 계속하여 함께 살 수 없음. 또는
- 배우자가 간통함.

신청하기 전에 기다려야 하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별거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시기에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는 한 기다리지 않고 신청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는 최소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이어야 이혼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가혹 행위나 간통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재결합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별거를 기초로 하여 이혼 신청을 한 경우, 화해의 노력으로 최대 90일까지 재결합하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재결합 시도가 실패하면, 그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이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 부모가 자녀 양육비와 육아 계획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절차의 일부로 이 같은 사안들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혼인 관계의 모든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자녀 양육비 계획이 만족스럽게 마련되어야만 이혼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 어디에서 이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주나 준주에는 중재 같은 가사 사건 서비스가 있어서 법정에 가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가 이 같은 사안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의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해도 되나요?

가족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상이한 법률뿐 아니라 해당 주나 준주의 법원 절차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비록 한 번의 상담이라도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가족법 사안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나

준주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있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한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법 변호사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발효되는 시기는?

대부분 경우, 이혼은 판사의 이혼 승인으로부터 31 일 후에 발효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하고 나면, 이혼한 배우자들은 이혼과 발효일을 확정하는 이혼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명서 사본은 어떻게 받나요?

이혼 증명서 사본이나 이혼 관련 기타 정보를 받으려면, 자신의 이혼이 처리된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혼이 처리된 법원을 잘 모르겠으면, 중앙 이혼 소송절차 등기소(Central Registry of Divorce Proceedings)에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소는 본인에게 이혼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이혼 증명서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등기소는 본인에게 이혼이 처리된 법원의 주소와 자신의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조회 번호를 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연락 방법

- 전화 613-957-4519 또는 청각 장애자인 경우 1-800-267-7676 또는
- [검색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양식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십시오.

전화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해두십시오.

- 본인 및 전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 결혼 날짜.

법무부에서 이혼과 별거에 관하여 제공하는 무료 정보를 이 짧은 [비디오](#),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Canada.ca/family-law

법적 책임과 한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법적 정보가 아니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조언을 가족법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같은 변호사들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 및 준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첫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의 특정 측면에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와의 단 몇 번 상담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